

I. 정보공개 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 의의

가.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나.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관련 판례(헌재 1991. 5. 13. 선고, 90 헌마 133)

「검사가 청구인에게 형사 확정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무조건 청구인의 복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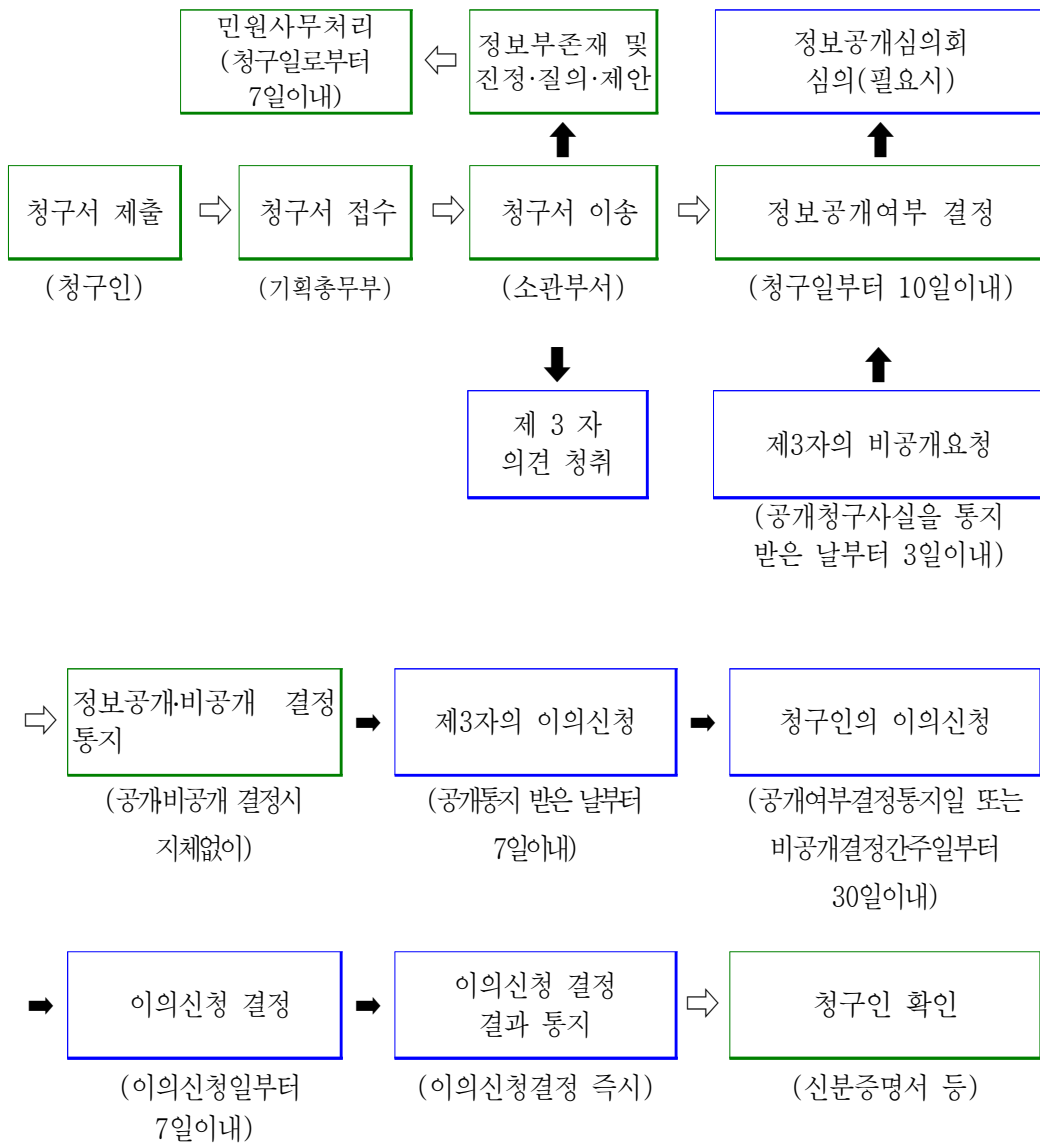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관련 법률현황

구 분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 정	'96.12.31. ('98.1.1.시행)	'96.12.31. ('98.1.1.시행)	'94.1.7. ('95.1.8.시행)
입 법 목 적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 확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사생활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공개대상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공공기관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행정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청 구 권 자	당사자, 이해관계인	국민, 외국인	본인

II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1 업무처리 흐름도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2 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

가. 법률상의 규정(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나. 청구가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 공 문 서

- 사무관리규정(행정기관이외의 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 종이문서,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모든 매체 포함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 부속서류, 자체생산 또는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접수한 문서

※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 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라.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마. 현존하지 않는 정보(정보 부존재)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 정보 부존재 처리.

※ 부존재 처리방법

-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 정보부존재 사유 명시
 - ☞ 청구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 ☞ 보존기관 경과에 따라 국가기록원 이송 또는 폐기된 정보
 - ☞ 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공이 필요한 정보
 - ☞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정보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부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통지

바. 진정·질의민원 처리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3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가. 청구권자

-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
 - 모든 국민 : 자연인/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외국인 : 국내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체류자 국내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

나.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공개신청은 주관부서(기획총무부)에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소관부서)로 이송

☞ 청구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구술, 정보통신망

※ 접수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 왼쪽상단에 처리기한(10일이내)를 명시한 후 이송하고, 즉시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처리과에 안내하여 직접 공개토록 안내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

- 법률의 취지상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의 사용목적과는 상관없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목적 삭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서의 기재 항목에 공개방법을 추가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하여 담당 자에게 구술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생략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서

※ 일반민원형식(편지형식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서식과 동일한 내용일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서로 접수하고, 차후에는 법령상의 서식에 의하도록 결정통지시 지도

○ 부서간의 협조

- 부서의 협조필요시 청구서 접수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요청
-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 소관기관에의 이송

청구된 정보가 청구받은 부서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부서에 이송

다. 공개여부결정 등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결정권자 :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됨

○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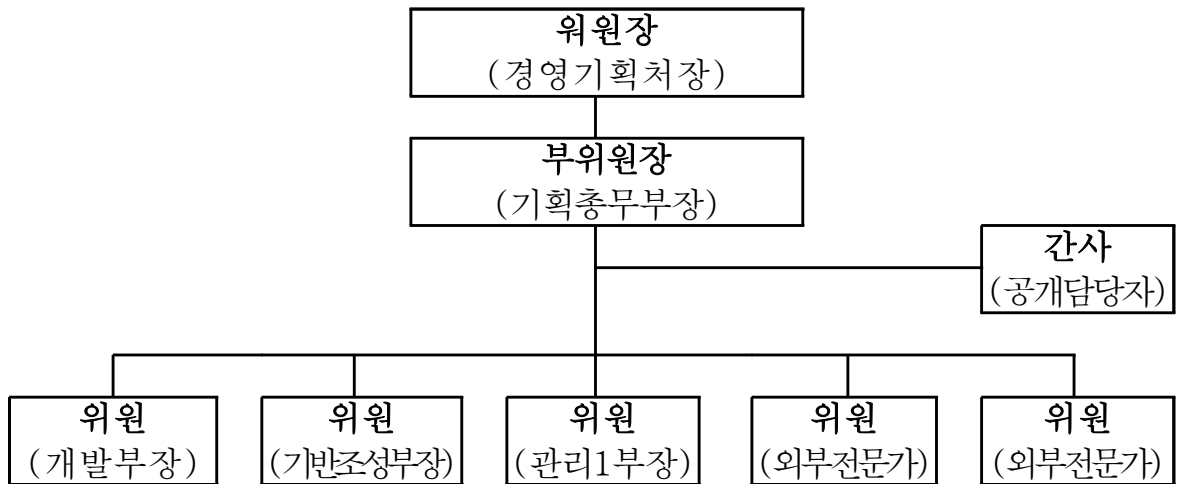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춘천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방법

- 원칙 : 서면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3자 의견청취서에 기록유지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공공기관의 조치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의견제출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가능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연장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 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 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20일(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이 지나도 공개여부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결정”으로 보지 않고 “비공개결정”으로 본 이유는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게 하여 즉시 불복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처리기간의 계산방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기간을 계산함에는 접수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함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참조

라.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통지방법】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인터넷으로 제출된 청구서의 경우
 - ☞ 인터넷상의 내용 1부를 출력, 결재를 득한 후 인터넷상에 등록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에의 도달일 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개결정통지시에 공개일시는 공개여부 결정통지가 통상 우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일수, 공개하는 정보 중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의 고지절차에 필요한 일수 등을 감안하여 여건이 좋은 날을 정하면 될 것이며, 통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유부기는 단순히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그 이유는 청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등을 할 것인가의 판단을 하기 때문임

마. 공개실시

【정보의 적극 공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 적극적 정보공개 지향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 정보공개시는 청구인이 준비해온 수수료납부(공사계좌) 확인 후 자료를 교부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사본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
- 사본공개가 가능 경우
 -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때
 -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중인 경우 등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부분공개방법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복사(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 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부분이 동일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사 즉시공개 가능정보 : 현재 준비중으로 '12.8월중 시범 서비스 예정**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사항】

○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 위임장 또는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반 행정자료 사본제공 등)에는 본인 여부 확인 생략

바. 비용부담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 징수의 근거

-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님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시행규칙 제7조(별표)로 결정(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 징수 후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비용감면】

○ 일반원칙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감면비율은 행정자치부지침('99. 1. 14)에 의거 50% 감면을 적용

4 불복구제절차

가.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나.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정이 기명날인

다. 행정소송

【제기관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Ⅲ. 비공개 대상 정보

1 법률상의 비공개 대상정보

가. 일반사항

- 청구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 비공개정보에 대한 한정적 열거 및 임의규정(비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여부 판단 : 당해 공공기관의 장(담당자)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 국민의 알권리 VS 국가이익·사생활 보호 등 비교형량(판례)
- 하나의 정보에 공개/비공개요인이 혼합된 경우 부분공개
-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사유가 해제되면 그때 공개

나. 비공개사유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조 문 내 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 용 사 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춘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3.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조 문 내 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 용 사 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조 문 내 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 용 사 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계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하 “편입물건” 이라한다)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편입물건의 보상금액 나. 편입물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 4.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보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조 문 내 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 용 사 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조 문 내 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 용 사 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법령 및 충청시 자치법규·행정규칙 공사의 규정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 내용의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9.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조 내 문 용	<p>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적 용 사 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p>※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p>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조 문 내 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 용 사 례	1.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관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조 문 내 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 용 사 례	1.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국가계획관련 포함) 결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단,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전의 관련정보

2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소송 관련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공 통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내용 및 민원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 통
공직재산 등록 조회 및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자료 거래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기획총무부
감사사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에 속하는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공 통
개인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정보제공자의 제3자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나.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비밀·보안	· 비밀·보안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기획총무부
정보통신 보안	· 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	
비밀 및 보안	·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현황 · 청사관련 설계도	“	
정보 보안업무	· 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 · 정보보호 시스템 관련자료 · 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	“	
정보통신	·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 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청사 경비관리	·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 방호계획, 테러대비 등 재난대비 자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공 통
부정행위자 정보	·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기획총무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 현황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라.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공 통
소청	· 소청에 따른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기획총무부
소송	· 진행 중인 소송관련 자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마.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위원회 관련 (회의록)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공 통
입찰관련 정보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찰 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공정한 계약업무 지장초래 (개인 정보보호)	
외주화 관련정보	외주화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내부의사 검토과정 정보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공직기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사실 문책 등 개인의 징계사항 • 사법기관 비위사실 통보에 따른 조사 및 징계사항 • 직무감찰에 대한 감찰사항 	공정한 업무처리 지장초래	기획총무부 (해당부서)
진정민원 및 비위 사항조사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민원(비위)에 의한 조사 및 징계사항 	“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처분에 관한 처분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처분에 따른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공직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정보 	“	
시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험응시자, 합격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공정한 시험관리 지장초래 응시자 사생활 침해우려	
인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근무성적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 평정표, 서열명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택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계획 및 개발에 관련자료 • 분양관련 업무 관련 자료 	“	개발부 기반조성부
택지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관리 계획 심의 사항 	내부 검토과정 정보	

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사업 추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공 통
포상(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등 포상관련 자료 • 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	
비정규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자료 • 근로계약 및 채용에 관한 자료 • 인적사항 및 그 밖의 개인별 관리자료 • 보험가입 관련자료 	“	
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 정보 	“	기획총무부
채용 및 인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 직원의 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 징계관련 자료 •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 관련 자료 • 인사기록 카드 및 각종 대장 •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	
교육평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부 등 개인관련 자료 • 교육수료 및 이수사실 통보자료 • 교육수료 취소 및 미이수 통보자료 	“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공 통
국·공유재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자료 	“	해당부서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급여 압류관련 자료 · 급여 개인정보 	“	기획총무부

사. 법인 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각종 단체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 등 인사관련 자료 ·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회의록 등 	법인의 이익보호	공 통
투자유치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 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 · 잠재투자자 관리 등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기반조성부

아.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담당부서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	해당부서
각종 프로젝트사업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	“	
도시 · 택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 구역 지정사항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사항 	“	

IV 참고자료 (수수료-법 제7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춘천시 조례에 따른 50% 감면은 별도 적용